

부산직할시사하구의회의원일비및여비지급에 관한 조례중개정조례안

의안번호

발의년월일 : 1992. 10. 10

발 의 자 : 강정순의원의외 4명

1. 제 안 이 유

국내 여비규정의 개정('92. 2. 29)으로 국내여비가 인상됨에 따라 지방의회 의원의 여비정액을 평균 10% 인상하여 여비지급의 형평을 기하려는데 그 목적이 있음

2. 주 요 골 자

회의 출석여비를 1일 의장, 부의장은 4,500원에서 5,000원으로, 일반의원은 4,000원에서 4,500원으로 500원씩 인상하고 의회소재지내 출장시 여비지급을 의장, 부의장은 5,000원씩, 일반의원은 4,500원씩 지급하고 의회소재지내를 부산직할시내 및 여행거리가 12Km 미만인 경우를 말함.

부산직할시사하구의회의원일비및여비지급에 관한 조례중개정조례안

부산직할시사하구의회의원일비및여비지급에관한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 7 조 별표 1 을 다음과 같이 한다.

지방의회의원 국내여비 지급범위(제7조제1항 관련)

(단위 : 원)

구 분	철도운임	선박운임	항공운임	자 동 차 운 임	현지교통비 (1 일 당)	숙 박 비 (1 일 당)	식 비 (1 일 당)	식 탁 료 1 야 당
의 장 부 의 장	1 등 급	2 등 정액	정 액	정 액	갑지 : 5,000 을지 : 4,000	갑지 : 17,000 을지 : 15,000	갑지 : 11,000 을지 : 9,500	800
의 원	2 등 급	2 등 정액	정 액	정 액	갑지 : 4,500 을지 : 4,000	갑지 : 14,000 을지 : 11,500	갑지 : 10,500 을지 : 9,000	800

비 고 : ① “갑지”는 서울특별시, 직할시, 도청 소재지 및 기타 시지역으로 “을지”는 갑지외의 지역으로 한다.

② 자동차운임 및 항공운임의 정액은 교통부장관의 인가요금을 기준으로 하되, 할인이 가능한 경우에는 할인요금을 지급한다.

③ 철도운임 구분표중 1등급은 새마을호 특실, 2등급은 새마을호 보통실, 당해 철도운임 구분표를 적용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노선의 열차 최고등급에 해당하는 철도운임을 지급한다.

④ 의회 소재지내에서의 출석 및 부산직할시내에 여행할 때와 여행거리가 12Km미만인 경우에는 현지교통비와 식비만을 지급한다.

제 8 조(의회사무실 소재지내에서의 출장시의 여비) 제2항중 “부산직할시내에서의”를 “부산직

할시내 및 여행거리 12Km이내의”로 한다.

제 8 조 별표3을 다음과 같이 한다.

의회소재지내 출장시 여비지급기준(제8조 제1항 관련)

구 분	지 급 액
의장, 부의장	1일당 : 5,000원
의 원	1일당 : 4,500원

비 고 : 회기중 본회의 또는 위원회에 출석할 때의 여비와 소재지내의 출장이 같은 날 병합할 때는 1일당 지급액을 초과 지급할 수 없다.

부 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 · 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<p>제 8 조(의회사무실소재지내에서의 출장시의 여비)</p> <p>1. (생 략)</p> <p>2. 제1항에서 “의회사무실 소재지내에서 의 출장”이라 함은 <u>부산직할시내에서의 출장을 말한다.</u></p>	<p>제 8 조(의회사무실소재지내에서의 출장시의 여비)</p> <p>1. (현행과 같음)</p> <p>2. ……………</p> <p>…………… <u>부산직할시 내 및 여행거리가 12Km이내의 출장을 말 한다.</u></p>

